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 2002. 10. 29.
규정 제1089호 }

개정 2004. 10. 1. 규정 제1201호

개정 2006. 8. 21. 규정 제1303호

개정 2010. 2. 16. 규정 제1435호

개정 2015. 8. 17. 규정 제17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의 교원, 직원 및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과 실시보상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을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기술의 이전 및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실시보상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교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나. 교직원 등이 대학교, 정부부처, 정부 출연기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신설15.8.17)

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대학교의 연구시설 및 인력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신설15.8.17)

2.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10.2.16)

-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신설10.2.16)
- 나. 제4조제5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거나 또는 포기하기로 결정한 발명 (신설10.2.16)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하며, 2인 이상의 공동 발명시 발명에 대한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 발명자”라 한다. (개정15.8.17)
 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과 반도체배치설계권, 퍼블리시티권, 캐릭터권, 데이터베이스권, 종자보호권,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개정15.8.17)
 5. “노하우”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를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개정 10.2.16)
 6. “실시보상”이라 함은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당 발명자에게 보상함을 말한다.(개정 10.2.16)
 7. “실시자”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요청하는 외부 제3자를 말한다. (신설 04.10.1)
 8. “기술이전”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발명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자문),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0.2.16)
 9. “산업자문”이라 함은, 교직원 등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자문 요청에 따라 산업기술의 개량·개발·지원(기술지도, 경영지도, 세무지도, 법률지도, 디자인지도 등)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5.8.17)

제2장 신고, 출원 및 지식재산권 관리

제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다.

(개정 10.2.16)

②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산학협력단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0.2.16)

④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대학교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신설 04.10.1)

⑤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15.8.17)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①교직원등이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4.10.1)

②교직원등이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해외출원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4.10.1) (개정15.8.17)

1. 직무발명신고서
2. 권리승계 합의서
3. 특허정보요약문
4. 해외출원신청서

제6조(자유발명의 신고) ①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개정 04.10.1)

②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신고된 발명이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발명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4.10.1)

②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4.10.1)

③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않거나,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한다. (개정 04.10.1)

④승계결정을 통보받은 발명자는 즉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04.10.1)

제8조(특허권의 승계)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이 취득한 특허권을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직무발명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04.10.1)

제9조(출원) 산학협력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받는 즉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4.10.1)

제10조(출원 등의 제한)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04.10.1)

제11조(지식재산권 관련비용) ①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소요되는 국내·외 제반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개정15.8.17)

②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04.10.1)

③지식재산권에 분쟁이 발생하여 비용이 소요될 경우 기술을 이전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발생수익의 범위내에서 소송비용의 일부를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한다.(개정 06. 8. 21)

제12조(지식재산권 유지) ①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년마다 권리포기 또는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15.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대표발명자에게 통보하여 발명자가 지식재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15.8.17)

제13조(이의신청) ①교직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신설15.8.17)

1. 제11조에 따른 특허관련비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2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교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15.8.17)

제3장 지식재산권위원회

제14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4.10.1)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산학협력단의 부단장, 기술사업화센터장, 산학협력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10.2.16)

③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에 단장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개정15.8.17)

제1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해외 출원 여부
3. 지식재산권의 승계여부
4.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5. 지식재산권 관련규정의 개폐
6. 기타 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7조(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단,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0.2.16)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지식재산권평가위원회) ①지식재산권의 평가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지식재산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15.8.17)

②평가위원회는 제16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관하여 예비심사를 하거나,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신설15.8.17)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15.8.17)

④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술사업화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교 교직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신설15.8.17)

⑤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15.8.17)

제4장 기술이전계약

제19조(사전통보)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해 실시자가 사용·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발명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0.2.16)

제20조(기술이전 계약의뢰 · 사전심의 등) ①발명자는 실시자와의 사전협의결과 당해 기술의 성공적인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협의 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기술이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체결의뢰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신설 04.10.1)

②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계약체결의뢰서와 계약관련자료(의견포함)에 따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위원회 회의시에 보고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0.2.16)

제21조(계약체결) ① 산학협력단에서는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및 실시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신설 04.10.1)

② 착수금, 기술료 등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04.10.1)

제22조(특례) ① 실시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와 동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사업의 폭·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일부 인하·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04.10.1)

② 본 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창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창업규정에 따른다. (신설 04.10.1)

제23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 자체가 상용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에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 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04.10.1)

② 산학협력단은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실시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04.10.1)

제24조(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기술실시업체와 로열티 계약 시, 이전 당시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산학협력단의 귀책 해약 시 손해배상 포함)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04.10.1)

제5장 보 상

제25조(실시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실시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가 또는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허출원 및 기술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후 아래와 같이 분배한다. 단, 연구협약에서

협약된 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내용에 따른다. (개정 10.2.16) (개정15.8.17)

구분		발명자	산학협력단	비고
기술 이전	특허	70%	30%	
	노하우	90%	10%	

②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③기술이전료가 현금으로 입금된 경우에 발명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15.8.17)

제26조(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①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또는 노하우의 기술이전으로 기술료 수익이 발생된 경우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기여도 평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15.8.17)

②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지급비율은 세부운영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15.8.17)

제27조(퇴직 및 사망 시의 보상금) ①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4.10.1) (개정15.8.17)

제28조(보상금의 반환)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5.8.17)

제6장 보 칙

제29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04.10.1)

제30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0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체결하는 기술이전계약부터 적용한다. (신설15.8.17)